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신규대조표

(2020. 08. 01. 시행)

변경되는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조항 순서기준)

<u>쿠팡(주)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u>	<u>쿠팡페이(주)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u>
<p>제1조 (목적)</p> <p>본 약관은 <u>쿠팡</u>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u>쿠팡캐시</u>'라고 합니다)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고 합니다)를 <u>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u>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1조 (목적)</p> <p>본 약관은 <u>쿠팡페이</u>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u>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u>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2조 (정의)</p> <p>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p>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이하 '<u>전자금융 업무</u>'라고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p> <p><u>3."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u></p> <p>4.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u>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u> 말합니다.</p> <p>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p>	<p>제2조 (용어의 정의)</p> <p>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u>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u></p> <p>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p> <p><u>3. (삭제)</u></p> <p><u>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u> 말합니다.</p> <p><u>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u></p>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7."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8.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9. "이용자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0.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1.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6.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이용자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9.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0.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

<p>다.</p> <p><u>12.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u></p> <p><u>②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u></p>	<p>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p> <p><u>② (삭제)</u></p>
<p>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p> <p>①회사는 이용자가 <u>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회사가 운영·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www.coupang.com)" 및 "쿠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하 통칭하여 '인터넷사이트 등'이라고 합니다)에 게시하고</u>, 이용자가 본 약관이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p> <p>③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u>인터넷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u>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약관을 <u>인터넷사이트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u>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p> <p>④회사는 제3항에 따른 <u>고지</u> 및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u>고지 및 통지합니다.</u></p>	<p>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p> <p>①회사는 이용자가 <u>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u>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p> <p>③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u>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u> <u>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u>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u>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www.coupang.com)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u> <u>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u></p> <p>④회사는 제3항의 <u>공지</u> 또는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u>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u></p>
<p><u>(신설)</u></p>	<p><u>제5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u></p>

	<p><u>①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u></p> <p><u>②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합니다.</u></p> <p><u>③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쿠팡페이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u></p> <p><u>④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와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를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u></p>
<p>제5조 (이용시간)</p> <p>②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u>따라</u>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p>	<p>제6조 (이용 시간)</p> <p>②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u>의하여</u>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p>
<p>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p> <p><u>②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u></p>	<p>제7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p> <p><u>②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u></p>

<p><u>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u></p> <p><u>2.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u></p> <p><u>3.접근매체를 질권 및 그 밖의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u></p> <p><u>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u></p>	
<p>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p> <p><u>①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u></p> <p><u>②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인터넷사이트 등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연락처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의 고객센터의 기능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u></p> <p><u>③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교부를 요청받았으나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그 사실 및 사유를 알립니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u></p> <p><u>④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u></p>	<p>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p> <p><u>①회사는 서비스 내 사용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u></p> <p><u>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u></p>

와 같습니다.

- 1.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4.거래 일시
- 5.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7.추심이체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8.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기록
- 9.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⑤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전자금융거래일시
- 5.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7.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8.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9.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2.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4.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4층 쿠팡페이 주식회사

* 이메일 주소 : help@coupang.com

* 전화번호 : 1577-7011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②회사는 전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②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

<p>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u>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u></p>	<p>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u>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로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u></p>
<p>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과 보존)</p> <p>① <u>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u></p> <p>② <u>전항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u></p>	<p>(삭제)</p>
<p>제10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및 거래지시의 철회)</p> <p>① <u>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u></p> <p>1. <u>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u></p> <p>2. <u>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u></p> <p>3. <u>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u></p> <p>② <u>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인터넷사이트 등의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연락처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의 고객센터의 기능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u></p>	<p>(삭제)</p>

<p>있습니다.</p> <p>③이용자는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대금으로 전자지급수단을 지급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행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의 방법에 따라 해당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p>	
<p>제11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p> <p>회사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p>	<p>(삭제)</p>
<p>제12조 (회사의 책임)</p>	<p>제10조 (회사의 책임)</p>
<p>(신설)</p>	<p>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p> <p>①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4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8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②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p>
<p>(신설)</p>	<p>제12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p> <p>①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p>

	<p><u>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2항 및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u></p>
<p>(신설)</p>	<p>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p> <p><u>①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u></p> <p><u>②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p>
<p>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p> <p>①이용자는 <u>인터넷사이트 등의 초기화면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u>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제출 및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p> <p>②회사는 <u>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u></p>	<p>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p> <p>①이용자는 <u>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u>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② <u>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u></p>
<p>제14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p>	<p>제15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p>
<p>제15조 (약관 적용의 우선순위)</p> <p>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u>본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u></p>	<p>제16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p> <p>② <u>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u></p> <p>③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p>

	<p><u>함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u></p>
<p>제16조 (관할) <u>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u></p>	<p>(삭제)</p>
	<p>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7조 (정의) <u>"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u></p>
<p>(신설)</p>	<p>제18조 (거래지시의 철회) <u>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u> <u>②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u></p>
<p>(신설)</p>	<p>제19조 (한도 등) <u>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p>
<p>제2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7조 (정의)</p>	<p>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20조 (정의)</p>
<p>제18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p>	<p>제21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및 지급방법)</p>

<p>(신설)</p>	<p>제22조 (거래지시의 철회)</p> <p>① <u>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u></p> <p>② <u>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u></p>
<p>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p> <p>제19조 (정의)</p> <p>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p> <p>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용되는 쿠팡캐시 또는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인터넷사이트 등의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u>2. "쿠팡캐시"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관리하는 선불식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u></p> <p>3. "판매자"라 함은 <u>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u></p> <p>4. "이용자"라 함은 <u>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u></p>	<p>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p> <p>제23조 (정의)</p> <p>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p> <p>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용되는 쿠팡캐시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인터넷사이트 등의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u>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u></p> <p>3. '판매자'라 함은 <u>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u></p>

(신설)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제한)

①회사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타인의 명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다른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지불 수단별 충전정책을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니다.</p>
<p><u>(신설)</u></p>	<p><u>제26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u></p> <p><u>①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u></p> <p><u>②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u></p> <p><u>③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u></p> <p><u>④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u></p> <p><u>⑤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u></p>
<p><u>(신설)</u></p>	<p><u>제27조 (거래지시의 철회)</u></p> <p><u>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u></p>
<p><u>제20조 (유효기간)</u></p> <p><u>①회사는 이용자가 이벤트, 미사용쿠폰 등에 대한 환불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무상으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u></p>	<p><u>제28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u></p> <p><u>①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제휴사의 포인트가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적립, 충전일, 전환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u></p> <p><u>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해당 이벤트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는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서비스 페이지</u></p>

②회사는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인터넷사이트 등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는 고객센터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③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회원 탈퇴)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21조 (구매 취소 및 환급)

②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적립된 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비용없이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하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액 전부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1.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이용자가 이벤트, 포상, 보상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은 그 무상 제공 시에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29조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②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 단,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잔액을 환급합니다.

2.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대상에서 제외(무상 제공 시에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함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한 경우에는 환급)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④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22조 (환수)

회사는 이용자가 보유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삭제)

<p><u>1.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제공원인 사유가 취소된 경우</u></p> <p><u>2.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한 경우</u></p>	
<p>(신설)</p>	<p>제30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p> <p><u>①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 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u></p> <p><u>②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u></p> <p><u>③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회사의 정책을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p>
<p>부칙</p> <p>이 약관은 <u>2019년 6월 3일</u>부터 시행됩니다.</p>	<p>부칙</p> <p><u>이 약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2020년 08월 01일부터 2020년 08월 07일까지 쿠팡페이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 동안 쿠팡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u></p>